

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

○ 기 간 : 2000. 5. 22(월) ~ 5. 27(토) 【 6일간 】

구 분 일 시	개 요		비 고
	본 회 의	위 원 회	
5. 22 (월) 11 : 00	○ 개 회 식 ○ 제1차 본회의 • 제8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• 조례안등일반의안상정의건 • 1999년도세입·세출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 •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• 예산·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건		장소) 본회의장 사회) 의사담당
5. 23(화) 09 : 30 11 : 00	휴 회	○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•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•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• 조례안등일반의안심사	장소) 의회운영 위원회실 장소) 상임위원회실
5. 24(수) 10 : 00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•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•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	장소) 상임위원회실
5. 25(목) 10 : 00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•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○ 예산·결산특별위원회 운영 •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종합심사	장소) 상임위원회실 장소) 의회운영 위원회실
5. 26(금) 10 : 00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•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	장소) 상임위원회실
5. 27(토) 11 : 00	○ 제2차 본회의 •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 의결 • 예산·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 보고및의결 ○ 폐 회		장소) 본회의장

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

연 번	안 건 명	소 관 부 서	소 관 국
1	○'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	회 계 과	행정경제위원회
2	○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	감사담당관실	"
3	○성남시인터넷무역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	국제통상과	"
4	○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	문화체육과	사회복지위원회
5	○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	"	"
6	○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	환경녹지과	"
7	○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	건 축 과	도시건설위원회
8	○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	도 로 과	"
9	○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	"	"
10	○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	"	"

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비 고
1	'99회계년도예비 비지출승인안	☐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, 지방재정법 제41조, 성남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등의 규정에 의거 '99회계 년도에서 지출한 예비비의 시의회 사후승인을 얻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지 출 결 정 액 : 총 78건 16,263,221천원 · 지 출 액 : 총 78건 16,038,224천원 · 다음년도 이월액 : 3건 59,398천원 · 불 용 액 : 165,599천원	회 계 과	행정경제 위 원 회
2	성남시주민감사 청구에관한조례 안	☐ 제안이유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000명이상이어야 한다	감사담당관실	행정경제 위 원 회
3	성남시인터넷무 역지원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	☐ 제안이유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 중 영세성과 경험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입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기 위함	국제통상과	행정경제 위 원 회

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비 고
4	성남시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 안	☐ 주요골자 ○인터넷무역지원센터 구성 (안 제3조) ○인터넷무역지원센터의 기능(안 제4조) ○인터넷무역지원센터의 운영(안 제7조) ☐ 제안이유 성남시문화상 수상부문중 지역사회 개발부문이 모범시민상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문화상 수상부문에서 지역사회 개발부문 1명을 삭제	문화체육과	사회복지 위 원 회
5	성남시전통사찰 보존구역주변 지역보호를위한 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사찰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 · 공포되므로서 ·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전통사찰 주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☐ 주요골자 · 단체장의 책무, 주민의 권리 및 책무,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여 전통사찰 주변보호에 다함께 노력함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 · 주변지역 보호 기본원칙을 정함(안 제6조) ·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(안 제7조제1항)	문화체육과	사회복지 위 원 회

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비 고
6	탄천유역환경 행정협의회규약 동의안	· 기본계획안을 공고하여 전통사찰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,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(안 제7조제2항, 동조제3항) □ 제안이유 · 탄천은 용인시 구성면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총연장 69.2km의 준용하천으로 경기도 3개시와 서울 3개구가 인접해 있으며 · 탄천유역의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인구 집중등으로 인하여 탄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· 탄천수계에 인접한 기초자치단체간에 환경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가. 협의회 구성근거 :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. 협의회 구성기관 및 위원 경기도 성남시, 용인시, 과천시 서울시 강남구, 송파구, 서초구등 6개 지방 자치단체 및 단체장 다. 협의회 주요협의사항 ·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·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· 수질개선을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사항 · 수질생태계 조사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·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환경녹지과	사회복지 위 원 회

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비 고
7	성남시건축조례 중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 보완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준주거지역내 자동차관련 시설인 매매장을 허용 함으로써 건축규제 완화(안 제18조) · 대지안의 공지적용 건축물중 단대동구간 토지 지번변경으로 인한 구간지번 정정(안 제38조) · 용적을 완화조항 신설 (안 제52조1) · 2이상의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내용에 대하여 법적용의 명료화(안 제56조)	건 축 과	도시건설 위 원 회
8	성남시도로시설 통행요금징수 조례중개정조례 안	☐ 제안이유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적용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예 다른 부칙 제3조(통행료 의 징수,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제1항 규정에 의거 통행요금을 징수할 도로시설(터널)의 공사 완료사항을 공고하고 유료도로법에 의거 통행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함 ☐ 주요골자 “도로법 제24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유료도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”로 개정	도 로 과	도시건설 위 원 회

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비 고
9	성남시유료도로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안	☐ 제안이유 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시기에 맞추어 그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조달 및 기채상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유료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특별회계 세입은 통행료 수입, 타회계에서의 전입금 및 차입금, 국고보조금, 지방채 및 기타 수입으로 함(안 제2조) · 특별회계 세출은 유료도로 유지관리비, 일반관리비, 기채상환, 기타 유료도로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함(안 제3조) ·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준용(안 제4조)	도 로 과	도시건설 위 원 회
10	성남시유료도로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	☐ 제안이유 성남시유료도로(황송터널) 통행요금 징수관련 업무를 공정하고(요금누수방지)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성남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	도 로 과	도시건설 위 원 회

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비 고
		□ 주요골자 가. 민간위탁의 필요성 · 통행요금의 징수를 한시적(2000. 7 ~ 2009. 6)으로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고, 통행요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함 나. 위탁비용 · 관리인력 및 통행요금 징수시설 유지관리비 - 계 : 515,200천원 - 인 건 비 (14명) : 334,528천원 - 경비(사무용품 및 시설유지비등) : 163,284천원 - 공 구 비 품 구 입 : 17,388천원 다. 협약서 내용 위·수탁사무, 위·수탁기간, 통행요금 징수 및 수입금 조치, 인력관리, 예산의 지원, 협약의 변경		